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정책과제

*Welfare Service Use in People with Disabilities:
Current State and Policy Implications*



윤상용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소득보장, 의료보장, 일상생활지원, 자가운전 지원, 세금 및 요금 감면 등 전체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2011년과 비교할 때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장애인들의 전반적 복지욕구로서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장애인 인권보장 등 과거 조사에서 높게 나왔던 항목들이 이번 조사에서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는 장애인연금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현금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적극적 연계,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의료재활서비스체계 개편 등 의료욕구의 충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예산과 대상 인구 규모 측면에서 급격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 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개인별 지원서비스와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등 현금급여의 확대가 두드러졌다.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장애인실태 조사에서는 공적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복지체감도와 개별 서비스의 이용 경험 및 욕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 조사에서 복지서비스 영역을 따로 구성하여 조사해왔으며, 2014년 조사에서도 이러한 시계열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1년

조사문항과 거의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고에서는 추정 장애인의 장애 등록률 및 장애등급 변동 현황, 장애등록 후 복지체감도,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 장애인복지기관 이용경험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범주별 복지욕구 등을 중심으로 2014년 조사결과를 살펴보고, 이어서 이러한 조사결과가 갖는 시사점 및 정책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가. 장애등록 현황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으로 추정

표 1. 장애인등록 여부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96.7	95.9	92.9	91.9	88.8	96.5	100.0	92.1	93.8	81.9	84.7	83.3	100.0	89.2	88.7	95.1
아니오	2.6	3.3	6.6	7.8	10.5	2.6	0.0	4.0	1.8	6.9	12.1	11.6	0.0	10.8	11.3	3.9
신청 중	0.4	0.5	0.5	0.3	0.8	1.0	0.0	3.7	3.8	11.1	3.2	5.1	0.0	0.0	0.0	0.7
보훈처 등록	0.3	0.3	0.0	0.0	0.0	0.0	0.0	0.2	0.6	0.0	0.0	0.0	0.0	0.0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339,570	289,257	274,483	277,432	21,400	182,334	18,951	105,001	71,877	8,456	15,984	11,838	3,012	16,705	9,764	2,646,064

된 사람의 장애인등록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추정 장애인의 95.1%가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난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1.3%p 낮은 것이다. 장애유형별로는 비교적 등록율이 고르게 높았으나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등 내부장애인의 장애등록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등록한 장애인들의 장애등급을 살펴보면,

1급이 7.8%, 2급이 13.1%, 3급이 18.2%, 4급이 15.2%, 5급이 21.5%, 6급이 24.1%였다.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1, 2급 장애인은 20.9%로 2011년 조사에 비해 1.9%p 줄었으며 경증의 비중이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영역의 장애와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등 내부장애, 그리고 뇌병변장애에서 중증의 비율이 높은 것

표 2. 등록 장애등급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1급	2.7	18.7	15.6	2.3	3.1	25.0	50.9	2.8	6.7	0.0	9.4	8.2	0.0	0.0	9.9	7.8
2급	4.8	21.0	4.3	19.0	7.8	35.6	40.5	23.7	72.3	6.6	25.0	3.8	25.0	0.0	19.3	13.1
3급	11.9	25.8	6.3	17.2	37.0	39.3	8.6	73.5	0.0	83.0	62.7	23.8	53.1	8.8	31.7	18.2
4급	20.2	13.0	3.9	20.4	49.9	0.0	0.0	0.0	0.0	0.0	0.0	4.6	21.9	63.6	35.7	15.2
5급	30.3	11.9	10.2	25.5	2.2	0.2	0.0	0.0	21.0	10.5	0.0	59.7	0.0	27.6	3.5	21.5
6급	30.0	9.5	59.7	15.6	0.0	0.0	0.0	0.0	0.0	0.0	2.9	0.0	0.0	0.0	0.0	2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295,137	277,497	254,904	254,879	18,999	175,890	18,951	96,707	67,453	6,928	13,544	9,864	3,013	14,898	8,659	2,517,323

을 알 수 있다.

장애인등록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1988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등록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도 도입 초기인 1988~1990년에는 전체의 2.0%만이 등록을 하였으며, 1990~1995년에는 전체의 3.5%가 등록하였다. 2006년 이후 등록한 장애인이 53.1%에 달하였는데,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한 장애인 복지사업의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장애유형별로는 단계적 범주확대에 따라 등록시기가 다른데, 이에 따라 정신장애와 내부장애가 외부신체장애에 비해 등록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결과 '별로 받고 있지 못하다'가 49.0%로 가장 많아 기대만큼 충분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우 또는 약간 받고 있다가 전체의 35.8%인 반면, 전혀 또는 별로 받고 있지 못하

다가 64.2%로 약 2/3 정도는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인복지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서비스 미수급 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더불어 복지확대에 비례하여 장애인의 복지욕구 역시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장애유형별로 재심사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상태의 변동 또는 장애인연금이나 활동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장애인의 17.6%가 재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조사에서 15.8%의 장애인이 재심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결과와 비교할 때 약 2%p 증가한 것으로서 신규 사업 확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받은 경우가 59.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장애상태가

표 3. 장애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매우 많음	2.4	6.3	2.6	2.6	3.2	4.8	4.8	11.2	9.6	0.0	4.1	2.8	0.0	4.5	7.6	3.6
약간 받고 있음	26.3	37.0	28.4	33.1	33.4	52.5	52.5	49.1	47.7	37.6	44.2	34.5	31.4	25.6	59.0	32.2
별로 받지 못하고 있음	54.5	43.3	51.5	48.3	55.6	34.1	30.7	31.2	34.3	53.7	41.5	36.3	47.3	52.6	26.5	49.0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16.9	13.4	17.5	16.0	7.7	8.6	11.2	8.5	8.5	8.7	10.2	26.5	21.3	17.3	6.8	1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294,748	277,497	254,902	254,879	18,998	175,890	18,950	96,707	67,452	6,928	13,544	9,864	3,013	14,898	8,659	2,516,929

표 4. 장애등급 재심사 사유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장애인연금신청	5.4	7.2	6.6	4.8	0.0	11.5	7.9	7.3	2.8	0.0	0.0	0.0	0.0	0.0	0.0	6.6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3.0	5.6	8.2	1.1	0.0	9.0	2.7	1.5	0.0	0.0	10.6	0.0	0.0	0.0	0.0	4.2
장애 재판정 시기가 되어	56.0	59.3	45.5	57.4	78.5	60.1	75.3	84.7	45.2	62.4	39.0	34.2	0.0	72.4	69.2	59.5
장애상태변화	31.6	26.8	35.8	34.9	21.5	15.5	14.2	6.5	52.0	37.6	38.5	65.8	100.0	27.6	30.8	27.2
기타	4.0	1.1	3.9	1.9	0.0	3.9	0.0	0.0	0.0	0.0	11.9	0.0	0.0	0.0	0.0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29,827	84,917	32,257	37,168	2,331	65,300	9,643	43,834	23,814	1,484	3,496	1,032	316	3,987	3,875	442,381

변하여 27.2%로 2011년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더불어 장애인연금신청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으로 인해 재심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7.6%에서 10.8%로 3%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가 재심사 비율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등급 재심사 후 등급이 조정되었는 지에 있어서는 2011년보다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45.2%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하향 조정된 장애인이 전체의 60.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상향조정 38.1%, 조정없음 1.4%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으로의 장애심사 기관 지정과 더불어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장애등급 심사가 엄격해진 결과로 판단된다.

표 5. 장애등급 조정 내용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하향 조정	76.4	47.7	89.8	76.1	35.3	59.9	78.4	24.7	37.1	0.0	47.0	100.0	100.0	51.8	73.7	60.6
상향 조정	22.8	51.5	6.9	23.9	64.7	40.1	21.6	70.4	58.8	100.0	53.0	0.0	0.0	48.2	26.3	38.1
조정 없음	0.8	0.8	3.3	0.0	0.0	0.0	0.0	5.0	4.1	0.0	0.0	0.0	0.0	0.0	0.0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54,628	44,138	14,917	17,418	1,419	25,320	1,977	18,161	13,354	558	890	450	316	2,675	1,621	197,572

한편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 본 결과, 전체적으로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34.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등록해도 별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 21.2%, 등록과정이 번거로워서 13.5%, 남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장애등록 안내 및 장애인복지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장애인들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얼마나 이용해 봤는지를 알아보았다.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소득보장 사업, 의료보장 사업, 사회서비스 사업, 자가운전 지원 사업, 세금 및 요금 감면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에 대한 이용률을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경증 장애수당 수혜 경험이 전체의 15.5%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장애인연금(11.3%), 장애인자녀교육비 지급(2.5%),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1.8%), 장애아 동수당 지급(1.3%), 장애인자립자금 대여(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연금과 경증장애수당을 합한 수혜율이 26.8%로서 2011년의 동 비율인 25.7%보다 약 1%p 증가하여 성인 장애인에 대한 현금 급여 지급율이 2008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의료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의료급여) 실시 사업에 대한 경험률이 12.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7.8%), 장애인보조기구 무료 교부(6.1%), 장애

인 등록진단비 지급 사업(5.1%), 발달재활서비스(3.6%), 언어발달지원서비스(1.4%)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과 비교할 때 모든 사업에서 소폭 상승한 것이다.

셋째,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참여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사업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률이 5.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3.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0.4%,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역시 모든 사회서비스에서 2011년과 비교할 때 소폭 상승하여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는 보편적 자격 요건으로 인해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등 상기의 복지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용경험률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의 경우에는 39.2%의 장애인이 동 사업의 수혜를 경험하였으며, 승용자동차관련 세금 면제의 경우에도 26.2%의 장애인이 제도의 혜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할 때 역시 소폭 상승한 수치이다.

다섯째, 각종 세금 및 요금감면 사업의 경우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타 장애인 복지사업에 비해 사업에 대한 이용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의 경우 경험률이 83.3%로서 모든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이용경험률을 기록했으며,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과 공공시설 요금 감면 및 할인의 이용경험률은 각각 76.2%, 64.4%로서 역시 높게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할 때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이용률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다른 사업

표 6.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소 트 보 장	장애인연금	4.2	19.1	11.25	10.0	4.4	36.6	29.1	22.2	36.7	0.0	20.7	2.9	0.0	4.9	14.8	11.3
	경증장애수당	14.6	15.8	11.8	12.2	14.6	13.8	3.0	46.2	13.8	3.9	19.7	18.4	16.9	22.1	56.6	15.5
	장애아동수당	0.1	1.9	0.5	1.1	0.6	10.0	12.5	0.7	0.0	0.0	0.0	0.0	12.9	0.0	0.0	1.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1.0	2.1	2.1	2.9	1.3	13.7	23.4	1.5	1.5	0.0	1.8	0.0	12.9	2.4	0.0	2.5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0.3	2.7	0.6	1.1	3.6	11.2	48.9	0.9	0.7	1.4	1.3	0.0	12.9	0.0	0.0	1.8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0.2	0.1	0.1	0.0	0.0	0.0	0.0	0.4	0.2	0.0	0.0	0.0	0.0	0.0	0.0	0.0
의 료 보 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	4.4	9.3	6.3	5.9	4.8	19.1	14.7	17.2	31.6	0.0	7.7	21.3	0.0	5.4	33.6	7.8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3.2	7.3	3.9	4.3	5.7	10.0	7.9	17.9	4.8	2.1	5.1	0.0	12.9	10.3	34.3	5.1
	장애검사비지원	2.8	7.0	3.5	5.0	3.4	10.4	6.2	18.9	9.1	2.1	0.0	4.3	0.0	10.7	30.1	5.0
	발달재활서비스	0.9	6.7	0.5	1.6	7.0	20.5	71.1	4.1	0.0	3.5	3.2	0.0	0.0	0.0	9.8	3.6
	언어발달지원	0.1	1.9	0.3	1.5	6.0	8.8	33.6	0.0	0.0	0.0	0.0	0.0	0.0	0.0	8.4	1.4
	장애인 보조기구 무료교부	4.9	15.2	7.8	6.6	3.4	1.6	0.0	0.3	6.3	0.0	10.0	0.0	0.0	8.3	0.6	6.1
	장애인 보조기구 건강보험(급여)	9.0	23.2	10.3	33.5	12.2	1.3	0.0	0.7	8.8	7.2	28.5	0.0	0.0	35.3	0.0	12.5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0.2	0.6	0.3	0.6	0.0	0.8	0.0	0.5	0.0	0.0	0.0	0.0	0.0	0.0	0.0	0.3
일 상 생 활 지 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1.3	6.6	5.3	0.5	1.7	9.9	38.6	2.1	3.2	0.0	3.3	0.0	0.0	0.0	0.0	3.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0.2	0.4	0.0	0.9	0.0	1.1	1.9	0.5	0.0	0.0	0.0	0.0	0.0	0.0	5.4	0.3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0.3	0.8	0.7	0.0	0.0	0.0	0.0	0.8	0.8	0.0	0.0	0.0	0.0	0.0	5.4	0.4
	노인장기요양보험	3.5	20.8	4.9	2.9	1.8	0.2	0.0	2.6	4.4	0.0	16.7	0.0	0.0	1.1	0.0	5.2
자 가 안 전 지 원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44.3	39.7	32.6	29.5	43.9	34.5	63.9	14.4	46.8	53.3	51.2	42.3	26.9	27.1	15.7	39.2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20.0	39.1	16.2	22.0	23.0	55.1	74.1	28.7	49.2	59.6	49.2	32.5	38.9	14.4	17.7	26.2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0.3	0.7	0.1	0.7	0.0	0.8	0.0	0.1	1.4	1.7	0.0	0.0	0.0	0.0	0.0	0.4
세 금 및 요 금 감 면	세금 공제 및 면제	41.1	42.4	37.5	38.2	46.0	33.6	57.5	23.3	47.4	46.7	48.9	34.5	42.4	32.3	22.0	39.6
	교통관련요금 감면 및 할인	78.6	72.8	75.1	70.2	73.0	76.2	82.9	72.9	79.8	69.6	77.5	77.0	100.0	54.9	79.1	76.2
	통신관련요금 감면 및 할인	86.9	81.4	83.3	77.0	70.3	79.8	85.4	69.9	85.0	81.9	82.2	74.4	100.0	73.5	80.8	83.3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 감면 및 할인	64.7	65.1	59.6	58.6	62.9	70.8	92.0	66.1	71.4	53.1	64.9	66.5	100.0	52.0	67.4	64.4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4.3	7.9	5.5	5.7	5.0	8.1	10.6	14.7	3.6	4.1	11.6	0.0	3.5	2.8	15.6	5.7

의 경우 모두 이전보다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공시설 요금 감면 및 할인, 세금 공제 및 면제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다.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이용 경험 및 이용 희망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여러 기관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우선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이용경험률을 살펴보았다. 18개 장애인복지기관 중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전체의 9.5%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특수학교(특수학급)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 각각 5.8%, 5.4%의 이용률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의료기관 3.6%, 장애인단체 3.1%, 직업재활시설 3.0%, 장애인 재활병·의원 2.5% 등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2011년 조사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인 가운데,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률은 소폭 감소한 반면, 특수학교(특수학급),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정신요양시설·의료기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재활병·의원 등의 이용률은 소폭 증가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복지기관인 장애인복지관이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해 본 장애인의 비율이 2008년 이래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외에 다른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부족과 함께 아웃리치와 홍보 등 신규 장애인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이 아닌가 판단

된다. 더불어 특히 직업재활서비스와 의료재활서비스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재활병의원의 이용률이 여전히 한 자리수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아쉬움을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재활병·의원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근로장애인의 수가 13천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장애인 재활병·의원의 경우에는 전국에 14개소에 불과한데다 10여년 넘게 신규 시설의 추가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기관 향후 이용 희망 정도를 살펴보았다. 18개 장애인복지기관 중 가장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장애인 재활병·의원으로서 전체의 31.0%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24.0%, 장애인복지관 2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특성상 이용하기 어려운 기관을 제외하고 장애인복지기관의 이용 희망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이용 희망률을 보인 곳은 정신의료기관으로서 69.1%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59.5%,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54.1%, 특수교육지원센터 49.8%,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37.0%,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34.8%,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관 중 가장 높은 이용 희망률을 보여주었던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재활병·의원과 장애인 재활치료시설보다 순위가 낮아졌

표 7.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직업재활시설	1.4	2.2	2.6	1.8	5.5	16.1	15.6	6.9	0.0	0.0	1.9	0.0	0.0	0.0	4.9	3.0
장애인복지관 (단종복지관 포함)	5.4	12.0	9.3	9.5	6.4	32.1	42.2	15.3	7.9	0.0	4.4	2.9	0.0	0.3	22.7	9.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0.1	1.5	1.0	0.4	0.0	6.1	16.1	3.0	0.0	0.0	0.0	0.0	0.0	0.0	0.0	1.0
장애인체육시설	1.6	2.6	2.3	1.4	0.0	6.5	19.7	2.7	0.6	0.0	0.0	0.0	0.0	0.0	8.4	2.2
장애인수련시설	0.0	0.0	0.1	0.3	0.0	2.7	5.3	1.0	0.0	0.0	0.0	0.0	0.0	0.0	0.0	0.3
장애인심부름센터	0.2	0.9	1.5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4
장애인재활치료시설	1.2	6.8	0.0	0.7	2.2	9.3	11.6	2.3	0.8	0.0	0.0	0.0	0.0	0.0	0.0	2.3
점자도서관	0.0	0.0	2.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수화통역센터	0.0	0.0	0.0	5.5	1.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6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장애인콜택시,해피콜 등)	3.3	14.9	7.8	1.0	0.6	8.7	17.1	1.6	12.6	0.0	2.8	0.0	0.0	1.5	14.5	5.4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0.6	1.2	1.6	0.7	3.6	2.3	3.4	1.7	0.7	0.0	0.0	0.0	0.0	0.0	13.6	1.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	0.1	0.4	0.2	0.0	2.3	0.9	0.3	0.7	0.0	0.0	0.0	0.0	0.0	0.0	0.4
지적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0.0	0.0	0.0	0.0	3.0	5.1	0.8	0.0	0.0	0.0	0.0	0.0	0.0	0.0	4.9	0.4
장애아동·발달 장애인지원센터	0.0	1.1	0.0	0.3	2.2	5.9	29.7	0.0	0.0	0.0	0.0	0.0	0.0	0.0	6.2	0.8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0.6	2.2	0.3	1.2	0.0	2.1	4.4	23.7	0.0	0.0	0.0	0.0	0.0	0.0	5.7	1.9
장애인 재활병·의원	1.7	9.3	0.2	0.5	1.8	3.5	10.2	4.3	0.3	0.0	0.0	0.0	18.3	0.0	4.9	2.5
정신요양시설·의료기관	0.7	0.7	0.0	1.1	0.0	2.9	8.7	69.8	1.1	0.0	0.0	0.0	0.0	0.7	6.9	3.6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0.0	0.0	0.0	0.0	0.0	0.3	0.0	7.1	0.0	0.0	0.0	0.0	0.0	0.0	0.0	0.3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0.4	4.6	3.0	6.4	2.1	49.9	75.6	1.6	0.0	0.0	0.0	0.0	0.0	0.0	18.2	5.8
특수교육지원센터	0.0	1.1	0.8	1.0	1.6	12.1	43.3	0.6	0.0	0.0	0.0	0.0	0.0	0.0	11.5	1.6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0.4	0.8	0.2	0.8	0.0	2.3	6.2	1.4	0.3	0.0	0.0	0.0	18.3	0.0	0.0	0.7
장애아동보육시설	0.0	1.3	0.0	0.1	2.8	7.6	25.8	0.0	0.0	0.0	0.0	0.0	0.0	0.0	2.7	0.9
장애인단체	2.6	2.8	4.5	3.3	4.0	5.3	11.4	1.6	3.2	2.1	0.0	0.0	0.0	0.0	13.3	3.1

으며,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의 관련 기관 이용 욕구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의 이용 희망률이 감소한 것은 앞서 장애인복지관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의 주된

프로그램이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다른 장애인구의 장애인복지관 이용에 대한 욕구 혹은 서비스 수혜에 대한 현실적 기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8.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직업재활시설	8.1	10.9	10.6	6.8	5.2	32.0	45.9	19.6	10.2	14.7	1.3	5.3	18.3	0.0	17.1	10.9
장애인복지관 (단종복지관 포함)	16.7	22.1	25.7	18.6	17.4	40.7	55.2	20.7	15.0	3.1	18.6	16.6	0.0	22.2	35.3	20.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5.8	15.6	6.4	5.2	6.4	25.9	43.9	11.2	5.0	1.7	9.9	5.0	7.9	1.7	14.8	8.8
장애인체육시설	14.4	16.7	15.7	11.5	18.6	30.1	70.6	16.1	7.4	7.3	5.9	13.6	21.3	14.5	28.1	15.9
장애인수련시설	5.9	8.3	7.0	4.7	6.7	17.8	39.8	7.5	3.9	4.2	3.2	2.0	31.2	10.8	21.5	7.3
장애인심부름센터	17.5	24.5	22.1	16.3	7.9	18.3	31.6	10.4	15.9	33.1	29.6	8.1	30.4	4.0	7.9	18.3
장애인재활치료시설	25.8	41.0	15.1	14.1	13.2	23.3	49.7	14.1	14.6	17.2	19.6	8.2	31.2	9.1	20.8	24.0
점자도서관	0.0	2.2	8.0	0.0	0.0	32.2	-	0.0	0.0	-	-	0.0	0.0	-	-	7.3
수화통역센터	0.6	0.8	0.0	10.9	3.5	2.0	7.1	0.0	0.0	-	-	-	-	0.0	0.0	8.6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장애인콜택시,해피콜 등)	33.0	51.0	34.6	27.5	22.2	37.7	60.1	21.7	37.9	48.1	42.4	21.4	33.0	32.4	42.7	34.8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10.0	10.6	12.0	8.7	9.1	28.4	51.4	16.3	10.5	9.8	6.1	17.1	18.3	6.2	40.6	12.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6.9	8.5	9.0	5.6	7.5	34.8	55.6	20.1	8.4	6.1	7.3	11.3	31.2	3.7	12.9	10.1
지적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17.4	25.8	0.0	13.0	66.7	57.5	50.5	0.0	-	-	-	-	-	-	56.9	54.1
장애아동·발달 장애인지원센터	9.6	39.7	50.9	47.5	28.3	31.7	72.3	0.0	0.0	-	-	-	0.0	-	64.6	37.0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8.5	15.2	9.0	7.9	9.5	25.8	39.5	49.3	6.3	17.7	14.4	11.9	0.0	12.1	37.3	12.4
장애인 재활병·의원	33.5	44.3	21.9	20.1	23.2	27.9	38.0	27.4	19.2	28.3	37.7	23.5	21.3	30.7	38.7	31.0
정신요양시설·의료기관	46.7	100.0	-	-	-	65.3	-	69.5	100.0	-	-	-	-	0.0	-	69.1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10.9	0.0	0.0	0.0	-	36.5	-	31.3	0.0	-	-	-	-	0.0	-	30.4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8.5	56.2	31.8	34.2	26.4	77.1	85.9	13.2	0.0	-	-	0.0	0.0	-	0.0	59.5
특수교육지원센터	8.6	43.0	44.7	34.4	44.6	64.8	83.9	29.1	0.0	-	-	0.0	0.0	-	70.5	49.8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8.4	9.2	11.1	7.6	1.7	33.6	56.7	18.1	9.7	4.2	4.0	12.5	18.3	15.8	26.1	11.2
장애아동보육시설	2.4	34.8	37.1	25.8	74.5	24.1	46.4	0.0	0.0	0.0	-	0.0	-	-	67.2	26.0
장애인단체	9.7	11.8	14.2	9.6	7.4	24.0	30.9	11.9	10.1	3.9	6.0	10.5	18.3	15.9	32.1	11.7

라. 장애인의 복지 욕구

장애인들의 일반적 복지 욕구로서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장애인

들이 첫 번째 요구로 꼽은 것은 소득보장으로 전체의 38.5%가 희망하였으며, 다음은 의료보장으로서 32.8%의 장애인이 요구하였다. 이어서 고용보장(8.5%), 주거보장(6.4%), 장애인 인권보장

(2.7%) 등이 장애인의 주요한 욕구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2011년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가운데, 여전히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다른 복지욕구를 압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의 주 내용이 장애의 지속적 관리 및 유지를 위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욕구라는 점에서 사실 의료보장의 욕구는 소득보장 욕구의 한 범주 혹은 또 다른 표현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며, 고용보장 역시 소득보장과 함께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소득보장의 또 다른 요

소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장애인의 근로능력 손상으로 인한 소득 결핍에 대응하여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현금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적극적 연계, 더불어 의료비 영역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현금 및 현물급여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3. 나가며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공급 확대의

표 9.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소득보장	39.5	37.4	36.6	38.7	29.0	36.3	17.6	44.4	41.5	33.0	27.3	28.1	70.2	29.0	37.6	38.5
의료보장	33.9	39.5	32.7	29.0	28.4	23.6	12.7	22.5	38.6	43.6	52.2	45.3	0.0	36.8	31.1	32.8
고용보장	8.8	4.6	9.3	8.7	15.0	10.2	16.0	8.6	7.0	3.9	4.2	7.8	16.4	11.4	2.7	8.5
주거보장	6.0	4.6	8.2	5.8	6.3	7.4	11.1	10.2	7.6	6.0	6.4	0.4	3.5	6.4	13.7	6.4
이동권 보장	1.7	4.1	2.2	0.6	0.0	1.3	0.0	0.7	1.0	3.7	4.7	0.0	0.0	4.0	0.0	1.8
보육·교육 보장	0.9	1.2	0.5	2.3	3.0	7.4	18.7	1.9	0.4	0.0	2.1	7.1	2.1	0.0	2.7	1.7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1.6	1.1	2.3	1.8	1.6	2.3	0.7	0.9	0.5	0.0	0.0	5.3	0.0	1.0	0.0	1.6
장애인 인권보장	2.2	1.2	2.2	2.9	11.3	6.1	14.3	3.1	1.2	8.2	3.2	3.1	0.0	3.8	12.3	2.7
장애인 인식개선	1.7	2.5	2.1	3.3	1.8	3.0	8.8	3.4	0.5	0.0	0.0	3.0	0.0	2.6	0.0	2.2
장애예방	1.3	2.0	0.3	1.5	0.0	0.2	0.0	2.3	0.0	1.7	0.0	0.0	0.0	0.0	0.0	1.2
의사소통과정정보 접근 참여보장	0.2	0.2	0.3	3.0	1.6	1.3	0.0	0.5	0.0	0.0	0.0	0.0	0.0	0.0	0.0	0.6
재난안전관리	0.6	0.2	0.7	0.2	0.0	0.4	0.0	0.2	0.0	0.0	0.0	0.0	0.0	0.0	0.0	0.5
기타	0.2	0.9	0.7	0.2	0.0	0.0	0.0	0.0	0.5	0.0	0.0	0.0	0.0	0.0	0.0	0.3
없음	1.4	0.5	1.7	2.0	2.0	0.5	0.0	1.2	1.1	0.0	0.0	0.0	7.9	5.1	0.0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339,570	289,257	274,483	277,433	21,398	182,334	18,950	105,001	71,876	8,456	15,985	11,839	3,013	16,704	9,765	2,646,064

기조하에서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더불어 장애인의 복지욕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에 있어서는, 소득보장 사업, 의료보장 사업,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 각종 세금 및 요금 감면 사업, 장애인 사회서비스 사업 등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2011년과 비교할 때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장애등록 이후의 복지혜택 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변화하는 복지 욕구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 봐야 할 것은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이용 희망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1순위로 꼽혀 온 장애인 복지관이 장애인 재활병·의원,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는 점인데, 이는 장애인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욕구의 증가라는 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사회재활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일반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특수학교(특수학급), 특수

교육지원센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등 정신적 장애인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욕구가 2011년에 이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과 함께 신체적 장애인에 비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기의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1순위)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장애인 인권보장 등 과거의 조사에서 높게 나왔던 항목들이 이번 조사에서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 현금급여의 대상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현금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적극적 연계, 그리고 의료비 지원 확대, 재활치료 수가 개선 및 의료재활서비스체계 개편 등 의료욕구의 충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